

##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정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1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7건 및 규칙안 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 입법예고 목록 -**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 개정규칙안**
- 3.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 4.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 6.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7.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임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광명시의회 공인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 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사유	
		관보 및 시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보 및 시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규칙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임

## 3. 개정규칙안 : 붙임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별표]

앞면(8.5cm)

제 호		
<b>광명시의회의원 신분증</b>		
성 명 :		(사 진)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광명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b>경기도광명시의회의장 (직인)</b>		

뒷면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사진(2.5cm×3.0cm)

2. 글자의 크기와 모양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광명시의회의원신분증	16포인트	명조체(청색굵게)
발 급 기 관 장	14포인트	명조체(청색굵게)
상기자는...증명함.	10.5포인트	명조체
기 타	8포인트	명조체

3. 신분증은 아크릴로 한다.

#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 1. 구 분 : 제 정

## 2.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에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의회기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나. 의회기의 규격 및 계양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3조)
- 다. 예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의원배지 규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마. 배지 교부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바. 광명시의회 영문표기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4. 제정 규칙안 : 불 입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원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의회의 상징 심벌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같다.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 ①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Gwangmyeong City Council” 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기춘 (02-2680-2537)

[별표 1]

##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 1. 모형도



### 2. 규격

#### 가. 깃면의 크기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 나. 의회기 바탕색 : 옥내용(자주색), 옥외용(청색)

#### 다.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라. 무궁화 동형 색채 : 금색

#### 마. 무궁화 모형 위치 : 세로의 3/12

#### 바. “광명시의회” 각 글자의 크기 : 10cm

#### 사. “광명시의회” 자 전체의 폭 : 80cm

[비고] 필요한 경우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한다.

### 3. 깃봉

깃봉의 모형은 국기봉으로 한다.

[별표 2]

##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 1. 모형도



### 2. 규격

(단위 cm, 색채 CMYK)

모형내용	규격	색채 (CMYK)
무궁화 5지	직경 1.8	금색(C:0, M:16, Y:100, K:0)
원형 꽃술	외경 1.1 테두리 0.1	금색(C:0, M:16, Y:100, K:0)
“의회”자	글자크기 0.8	금색(C:0, M:16, Y:100, K:0)
배지두께	2	금색(C:0, M:16, Y:100, K:0)

[별지 서식]

##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재교부 신청사유 :

위와 같이 의원배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199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최저수준으로 초저출산사회로의 진입하고
- 2014년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1.20명보다도 낮은 비율로 현재는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둘째아이에게도 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우리시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명시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추계서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둘째 아이”를 “둘째 아이(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희선 의원 대표발의
소 관	보건사업과
입 안	의원 조희선 (02-2680-2542)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기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u>둘째 아이</u> 300,000원, 셋째 아이 500,000원, 넷째 아이 이상 1,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인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p>	<p>제3조(지원 기준) ..... ..... <u>둘째 아이(단,</u> <u>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u> ..... ..... .....</p>

# 비용 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아 이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나. 관련 조문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둘째 아 이상 까지 확대 : 1,570명

·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추가 : 1,300명

· 기존 3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 240명

· 기존 4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30명

나. 추계 결과 : 540,000천원(2016년부터 390,000천원 추가소요)

○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540,000천원

· 둘째 아 출산장려금 : 1,300명 × 300,000원 × 1회 = 390,000천원

· 셋째 아 출산장려금 : 240명 × 500,000원 × 1회 = 120,000천원

· 넷째 아 출산장려금 : 30명 × 1,000,000원 × 1회 = 30,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 3. 작성자

○ 소속 및 성명 : 광명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 전화번호 : 02-2680-2790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 1. 구 분 : 제 정

## 2. 제안이유

- 저소득층 아동은 치과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구강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치과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7조)

## 4. 제정조례안 : 불 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관계법령 발췌서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공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의료비 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희선 의원 대표발의
소 관	보건사업과
입 안	의 원 조희선 (02-2680-2542)

[별지 서식]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용 청구서

- 사업자 등록번호 :
- 의료기관 명 :
- 의료기관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

시술대상자			부위-진료내용	청구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 금 주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_\_\_\_\_치과의원 성명 \_\_\_\_\_ (인)

광명시장 귀하

# 비용 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나. 관련 조문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안)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2015년 지역아동센터 인원 : 751명
  - 치과주치의 목표인원 : 500명

나. 추계 결과 : 20,000천원

- 구강건강관리비 : 20,000천원
  - 목표인원 : 500명 × 40,000원 = 20,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 3. 작성자

- 소속 및 성명 : 광명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 전화번호 : 02-2680-2790

#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아동복지법	<p><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li> <li>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li> <li>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li> <li>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li> <li>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li> <li>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li> </ol> <p>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p>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p> <p>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li> <li>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li> </ol>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

<p>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p> <p>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p> <p>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p> <p>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p> <p>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p> <p>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

#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1. 구 분 : 제 정

## 2.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적십자사의 활동 지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안 제3조 ~ 제4조)
- 보험 가입과 표창 (안 제5조 ~ 제6조)

## 4. 제정조례안 : 붙 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오윤배 의원 대표발의
소 관	복지정책과
입 안	의 원 오 윤 배 (02-2680-2536)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p>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①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p>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 구 분 : 제 정

## 2.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및 위탁 운영(안 제5조 ~ 제6조)
-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및 위탁 운영(위탁·운영비의 보조 및 장애인 우선 채용(안 제7조 ~ 제8조)

## 4. 제정조례안 : 불 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광명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광명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보건복지부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허가)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에 대한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정 호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 원 김 정 호 02-2680-2509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p> <p>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p> <p>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color: blue;">[전문개정 2015.1.28.]</p>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또는 광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주관 체육 행사 관련 광명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 광명시의회 또는 광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 경기, 행사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1호 및 제2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시생활체육회 등록단체의 연합회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단, 연합회장기는 연간 1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오윤배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체육진흥과
입 안	의원 오 윤 배 (02-2680-2536)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li> <li>2. <u>각급 행정기관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u></li> <li>3.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li> <li>4.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축구부가 있는 학교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li> <li>5. 광명시 여성축구단·50대축구단·60대 축구단·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li> <li>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li> <li>7.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국가적인 체육 행사</li> <li>8.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li> <li>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li> </ol>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u> -----</li> <li>2. <u>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시생활체육회 등록단체의 연합회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단, 연합회장기는 연간 1회)</u></li> <li>3. ~ 9. (현행과 같음)</li> </ol>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1일 50,000원”을 “수당은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개정(제1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자원순환과
입 안	의원 이병주 (02-2680-2503)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p> <p>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등)</p> <p>① ----- ----- -----<u>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p>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li> <li>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li> <li>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li> </ol>